

#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1월 14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11년 1월 17일)  
상정 원안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행정지원과장 김영국)

### □ 제안이유

- 부서기능에 맞추어 부서명칭을 변경하고,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실시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부서명칭 변경

- 문화콘텐츠진흥과 → 문화콘텐츠과
- 하수과 → 물재생과

나. 위임사무 조정

- 공원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신설(공원녹지과)
-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사무 삭제(교통시설과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답변 내용 |
|--|-------|
| ▶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·답변 내용과 같음. |       |

### 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문화콘텐츠진흥과 관과소별란 중 “문화콘텐츠진흥과”를 “문화콘텐츠과”로 한다.

별표 1의 공원녹지과 단위사무명란에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관과 소별      | 위임사무명   | 단 위 사 무 명              | 근거법 적용                 | 수임 기관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공 원<br>녹지과 | 1. 녹지관리 | 나. 녹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·징수 | ·같은 법 제38조·제41조 및 제43조 | 구청장   |

별표 1의 공원녹지과 위임사무명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관과 소별      | 위임사무명          | 단 위 사 무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법 적용   | 수임 기관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|
| 공 원<br>녹지과 | 4.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| 가. 공원의 유지관리<br>나. 공원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| ·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<br>· 같은 법 제24조·제41조 및 제43조 | 구청장   |

별표 1의 교통시설과란을 삭제한다.

별표 1의 하수과 관과소별란 중 “(하수과)”를 “(물재생과)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